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송도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371호

다. 제출일자 : 2020. 3. 13.

라. 회부일자 : 2020. 3. 18.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김태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389호

다. 제출일자 : 2020. 4. 1.

라. 회부일자 : 2020. 4. 8.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이승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390호

다. 제출일자 : 2020. 4. 1.

라. 회부일자 : 2020. 4. 8.

II. 제안사유

1.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안

-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건위생을 증진시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의 자문을 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 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시 택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조 신설)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자문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IV. 참고사항

1.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3 ~ 2020. 3. 30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여객시설(도시철도역사, 버스정류장 등), 도로(보도 등)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적극 시행중에 있으며,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시장의 감염병 예방방지를 위한 방역 노력 책무 규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본 조례 제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함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2020. 4. 21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

○ 우리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률 증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임차택시)'를 '13.7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16.10월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택시이용비용 일부를 지원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 장애인 전용개인택시(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추진근거와 이에 대한 세부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18.6.12.)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보장 강화를 위해 기시행중인 사업이므로 별도 의견 없음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2020. 4. 21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

○ 우리시는 '13.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를 방침에 의거 운영해 왔으나, 그 간 법적기구로의 제도화를 통해 그 위상을 강화 하고 자문기구 본래의 기능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에 서의 요청이 있었음

○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문기구로의 역할을 명문화 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함

V. 검토의견

1.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임산부,

1)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임

-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고위험군²⁾에 포함하여 고위험군의 경우 밀집지역 방문 자제 및 마스크 착용 필수를 행동수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10,331명 중 사망자는 192명으로, 이중 60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17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20%로, 전체 치명률(1.86%)보다 10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 확진자의 경우 일반 확진자보다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임신부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³⁾ 감염원으로 부터의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방문과 필수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 행동수칙(질병관리본부 자료)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3) 질병관리본부 홍보자료 & FAQ, <http://ncov.mohw.go.kr/>

-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일반 대중에 비해 더 취약하거나 중증,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합니까?

○ 현재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과학적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 임신부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SARS-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를 포함한 다른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질병,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코로나19 확진 발생⁴⁾으로 장애인 이동의 불안과 제약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임⁵⁾

※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4.7일 0시 기준)⁶⁾

구 분	확진자	(%)	사망자	(%)	치명률(%)
합 계	10,331	100	<u>192</u>	100	<u>1.86</u>
연 령	80세이상	466	<u>93</u>	<u>48.44</u>	<u>19.96</u>
	70~79	689	<u>57</u>	<u>29.69</u>	8.27
	60~69	1,304	<u>26</u>	<u>13.54</u>	1.99
	50~59	1,909	13	6.77	0.68
	40~49	1,382	2	1.04	0.14
	30~39	1,092	1	0.52	0.09
	20~29	2,819	0	0	0
	10~19	544	0	0	0
	0~9	126	1.22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4) 장애인콜택시 탑승고객 확진판정에 따른 조치사항 (서울시설공단 자료)

○ 확진자 : 송** (남, 뇌병1급, 휠체어, 은평구 응암2동) 고객은 음성이나 동승한 모친과 활동보조인
코로나19 양성 통보

○ 확진자 통보 : '20. 3.10(화) 15시경(서대문 보건소)

○ 고객과 접촉한 운전원 추적 및 조치 : '20. 2.28(금) 13:05:27 이후~

- 1차 간접접촉 운전원(8명) : 차량소독 후 자가격리(4일) 및 증상자 검체 검사 실시

* 운전원 8명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

- 2차 간접접촉 운전원(60명) : 즉시 근무종료 후 차량 및 5개 차고지내 휴게실 소독 및 폐쇄

○ 차고지 전문업체 방역 실시(완료) : '20. 3.11(수)

○ 차고지 24시간 폐쇄 후 정상근무 : '20. 3.12(목) 07시 ~. 끝.

5) 「콜센터發 집단감염, 대중교통 타고 번질라... 2600만 수도권 위협」, 조선일보, 2020.3.12.

- 구로 콜센터 직원 일부 2월말 첫 증상... 2·3차 확진자 22명 달해

- 수도권 전역서 출퇴근, 콜센터 부근 신도림역 하루 50만명 이용

「금천 마을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확진... 해당 노선 운행중단」, 뉴시스, 2020.3.10.

- 해당 노선 운영을 즉시 중단, 해당 노선 운전자 전원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 하루동안 차고지를 폐쇄·방역소독 시행, 해당 노선 전체차량 방역소독 시행

6)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 <http://ncov.mohw.go.kr/>

- 서울시 또한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2월에 3차례에 걸쳐 132억 31백만원의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⁷⁾ 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긴급방역 및 물품구입비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144억 13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해야 될 책무가 있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⁹⁾에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감염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태 발생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7) 재난관리기금 편성 내역 : 132억 31백만원

- 1차: 51억 64백만원, 2차: 6억 12백만원, 3차: 74억 54백만원

- 주요내용 : 지하철·버스 방역소독,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구매

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 참고 : 2020년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증감액	사업구분	주요사업내용
총 계		14,413	-	-
지하철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23	신규편성	- 방역소독용역(전동차, 차량기지, 역사 등) 3개월분 - 방역소독물품 구매 3개월분 * 1~8호선 방역소독용역 (전동차, 차량기지 등) 2개월분 ¹⁰⁾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31	기정증액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 운영관리	279	기정증액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41	기정증액	
버스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43	신규편성	- 버스분야(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방역비 지원 3개월분 - 버스승차대 방역비 지원 4개월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97	기정증액	- 장애인콜택시 차량 (520대) 소독비 지원 3개월분 - 차고지(36개소) 소독비 지원 3개월분

10) 1~8호선 방역소독용역의 경우 일부항목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1개월 추가 지원

2.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신설에 따라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신설 내용 [2018. 6. 12.]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1)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와 시각,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관련 법령 및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조례와 시장방침에 따라 운영 중에 있음

※ 참고 : 장애인 이동지원 교통수단 관련 법 및 조례

구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 택시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u>특별교통수단을 운행</u>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u>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u>서울시설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u>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u>별표 4 제2호아목</u> 에 따른 <u>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u> 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시설의 종류 및 기능</th> </tr> </thead> <tbody> <tr> <td>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td> <td>아. <u>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u>: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u>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u>나 그 밖의 <u>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u></td> </tr> </tbody> </table>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지원할 수 있다.</u> 1. <u>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u>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아. <u>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u>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u>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u> 나 그 밖의 <u>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u>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아. <u>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u>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u>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u> 나 그 밖의 <u>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u>					

○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2) 제16조에는 교통약자의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임차택시”의 경우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복지콜”과 “바우처 택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로 구분되어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바우처 택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복지정책실이 주관하여 계획수립 및 위탁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택시물류과 소관인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사업 추진 근거가 반영될 경우 부서간 사업운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관련법 개정내용이 자칫 민간 택시운송사업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바,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분별한 민간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참고 : 서울시 장애인 이동지원 교통수단 현황¹³⁾

구분	중증 이동장애인 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인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주관부서 (운영주체)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서울시 조례	내부방침	장애인복지법, 서울시 조례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준 1~3급) 장애인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지체노반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 지적 1급)
휠체어 가능여부	가능	불가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 대상) 단, 수동휠체어 장애인 이용은 가능		
이용방법 (이용요금)	센터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콜택시(나비콜, 엔콜 등) 를 통해 일반택시를 이용 하며, 복지카드를 결제 시 市에서 이용자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75%) 보조
운영규모	차량 제공 차원			보조금 지원
	특수차량 486대	개인택시 53대 (1년 단위 계약)	차량 158대	콜택시 차량 8,000대
시행시기	2003년	2013년	2000년	2016년

13)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2019.4.16. 참고자료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인차택시 운영규모는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서울시설공단, 2020.3)」 인용

3.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운영근거, 자문범위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협의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효과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520대를 운영중이며 2020년에도 100대를 증차하는 등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고, 운영 중 발생하는 차량 안전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음

※ 장애인콜택시 연도별 증차 현황¹⁴⁾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100대	120대 (증 20대)	170대 (증 50대)	220대 (증 50대)	280대 (증 60대)	300대 (증 20대)
2012	2013	2014	2016	2020	
360대 (증 60대)	410대 (증 50대)	424대 (증14대)	437대 (증 13대)	520대 (증 83대)	

* 2020년 장애인 콜택시 191대 도입예정(대폐차 91대, 증차 100대)

14) 서울시설공단 내부자료

- 협의회는 2013년 최초 방침¹⁵⁾이 수립된 이래, 현재 제4기 협의회를 구성·운영¹⁶⁾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표를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교통 전문가, 시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협의회가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은 물론, 운영 전반에 걸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회 근거를 비롯해 자문범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자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안은 협의회와 소위원회 운영 이외의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협의회와 인적구성, 임기, 해촉 등의 세부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15) 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기본계획(보행자전거과-3462, 2013.3.27.)

「장애인콜택시 운영 협의회」 구성 운영

- 구성 : 7명(장애인 명예부시장 1, 장애인 이용자 3, 시의원 1, 전문가 1) *보행자전거과 제외
- 기능 :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개선 정책 제안

16)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추진경위

- 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기본계획('13.3.27)
- 제1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계획('13.7.25)
- 제2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계획('15.10.28)
- 제3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계획('18.3.30)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실적

- '13년 3회, '14년 2회, '15년 2회, '16년 2회, '17년 1회, '18년 2회, '19년 27회(전체7회, 소위원회 20회)

※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의원선정('20.4.10) 후 방침수립 예정